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76
----------	-------

발의연월일 : 2026. 5. 7.

발 의 자 : 박성훈 · 이인선 · 박충권  
김기웅 · 신성범 · 정동만  
이헌승 · 고동진 · 김성원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케이팝 및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어 게임 및 음악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로만 제한되어 있어 이스포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대상인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및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 및 음악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 및 음악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체 경기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문화콘텐츠 및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제25조의7 및 제104조의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한다.

다만, 제작 중인 게임물 및 음악등(소비자에게 제공된 이후 관련 제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제2호가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문화콘텐츠의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를 합산하여 공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 음원, 음반, 음악과일, 음악영상물, 공연(이하 “음악등”이라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문화콘텐츠”로,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문화콘텐츠의 최초 제공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한다.

제104조의35제1항 중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를 “국내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이스포츠대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25조의6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4조(이스포츠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6(<u>영상콘텐츠</u>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영상콘텐츠</u>(이하 이 조에서 “<u>영상콘텐츠</u>”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u>영상콘텐츠 제작비용</u>”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영상콘텐츠</u>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25조의6(<u>문화콘텐츠</u>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u>문화</u> <u>콘텐츠</u>-----<u>문화</u> <u>콘텐츠</u>----- ----- -----<u>문화콘텐츠</u>----- ----- ----- ----- -----<u>문화</u> <u>콘텐츠</u>----- 「<u>소비자기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소비자에게</u>----- ----- ----- ----- ----- -----<u>다만, 제작 중인 게임물 및 음악등(소비자에게 제</u></p>

공된 이후 관련 제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제2호가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해당 문화콘텐츠의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소비자에게 최초로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를 합산하여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

1. -----문화콘텐츠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공연(이하 “음악등”이라 한다)

2. -----  
가. -----문화콘텐츠-----

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

-----  
-----  
-----

나. -----

-----  
-----  
-----

문화콘텐츠

-----  
-----  
-----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콘텐츠

-----  
-----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



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202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해당 이스포츠대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 중 100분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 ③ (현행과 같음)